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4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3. 31

판결 선고 2021.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18. 9.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11. 19. 접수 제49506호로마친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수 있다.

가. 제주서무서장은 2015. 9. 3. B에게 종합소득세 32,73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B은 2018. 9. 30.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2018. 11. 9.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이 유일하였고,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B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이는 B이 채권자인 원 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은 선산으로 종종에서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종중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바,B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82. 8. 3. 피고, C, D, E, 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1 . 4. 9. H 앞으로 20041. 3. 23.자 강제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에 관하여 2002. 6. 22. B 앞으로 2002. 5.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 3. 3.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및 피고의 지분 취득과 상실 경위 및 피고가 B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종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 분을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 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하선화

별지